

[상속분쟁 - 7] 부채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기 +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대법원 2013 다 73520) 판결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기 때문에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상속을 피하려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상속 포기로 인해 채권자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엄격한 기간과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원인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9 조). **상속 포기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 1041 조에는 상속 포기의 방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위 기간 내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 형식에 따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 1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 2 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 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00 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를 상속하지 않으려고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부채를 상속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 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분 중에 1분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자와 손녀 등 직계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카 등의 상속포기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포기보다 그 요건과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신문 등의 공고절차와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의 재산현황 또는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보등본, 보험가입증명(사망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부채증명, 피상속인이 채무자(피고)로 되어있는 대여금 청구 등의 판결문, 독촉장,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나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은행, 보험사에 가지거나 위임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 1000 조 (상속의 순위) 제 1 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 2 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절차

가. 신고의 방식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신고서)를 신고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 36 조, 동 규칙 제 75 조). 그 밖에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3 다 73520) 판결 요지

사안: 상속포기 신고 후 사망한 남편의 차량을 판 경우인데, 남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심판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 3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 1026 조 1 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상속분쟁,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비용경감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